

판매위탁계약서 No. : _____

글로벌 주치의 멤버십 서비스 판매 계약서

20 년 월 일

제1조 (목적)

이 계약서는 “(주)아라케어”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와 “글로벌 주치의 멤버십 서비스” 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판매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자 (이하 “판매원”이라 한다) 간의 권리와 의무, 신분, 수당 등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권리와 의무)

- ① 회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판매원에게 불리한 변경 시 사전에 통지 및 안내 하여야 한다.
 1. 회사는 판매원의 등록신청 사항이 허위이거나 불법 행위 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2. 회사는 완전판매를 위해 충분한 판매교육 및 준법교육을 실시한다.
 3. 회사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서비스의 범위 및 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 4. 회사는 제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,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
- ② 판매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1. 판매원은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등록을 신청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.
 2.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충분한 판매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교육 및 헬스케어라이프플래너 등 자격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
 3. 판매원은 판매 전 고객(회원)에게 법규에서 정한 회사 및 판매원 정보, 서비스 내용 및 가격, 청약철회, 약관, 소비자 보호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한다.
 4. 판매원은 허위 및 과장광고, 계약 강요, 유인 판매, 청약철회 방해 등 법규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.
 5. 판매원은 제3자에게 판매원 활동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원으로서의 의무사항은 아니다.
- ③ 회사와 판매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.
 1. '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'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 2. 고객의 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한다.
 3. 고객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(청약철회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)를 보장하고 철회 시 대금을 현금(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)한다.

제3조 (신분 및 활동)

- ① 판매원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회사 소속으로 한다.
- ② 판매원의 호칭은 “에이치엘피”(HLP : Healthcare Life Planner)로 한다.
- ③ 판매원은 '판매 계약' 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.
 1. 판매원 등록 신청서 1부 (회사 양식 :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포함)
 2. 신분증 사본 1부
 3. 주민등록등본 1부
 4. 수당 수령계좌 사본 1부 등 (본인 계좌 아닌 가족 계좌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 필수)
- ④ 판매원은 판매 활동 시 회사가 지급한 신분증과 명함을 사용한다.

제4조 (수정)

- ① '수당'은 서비스 판매 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총칭한다.
- ② 수당은 판매수당, 유치수당, 장기근속수당, 복리후생수당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 기준 및 금액은 회사 규정에 의한다.
- ③ 판매수당은 매출 발생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청약철회, 해지 및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한 과부족 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월 수당 지급 시 상계처리, 직접납입, 추가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산한다.
직접납입을 위한 회사 계좌는 다음과 같다.
'은행 : 국민은행, 예금주 : (주)아라케어, 계좌번호 : 381837-04-005209'
- ⑤ 계약 해지 이후 정당한 미지급 잔여수당 등은 별도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.

제5조 (연도 기준)

연도 기준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6조 (기타)

- ① 이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등을 따른다.
- ② 회사와 판매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20 년 월 일

회사

대표 : 서 덕 영 (인)
 (주) 아라케어
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7

판매원

성명 (인)
 주소
 생년월일